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30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정태호 · 김주영 · 염태영
황명선 · 안도걸 · 김영환
오기형 · 이학영 · 복기왕
신영대 의원(10인)

제안이유

2007년 제정된 현행법은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권만 강화되어 왔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노동계를 비롯한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정·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경영평가, 인사, 예산회계, 혁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관별 조직,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난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최근 국제적으로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공기업의 국가소유권은 집중하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외 경제·사회적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학병원 등 특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민간위원수를 확대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마.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공기업과 자산 2조 이상 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 제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봄(안 제28조 제3항 신설).

아.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0조제5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차. 경영지침을 수립할 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5월 3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센터를 설립함(안 제4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를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에”로, “투명성”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감독에 있어 그 운영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가목 중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 등”을 “기관 및 대학병원 등”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보수지침”을 “임원의 보수지침 및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2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계 및 노동계”를 “학계·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1인”을 “14인”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보수 분야 분과위원회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무처)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공무원 등의 파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등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상장 공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상장 공기업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시장형 공기업과”를 “공기업과”로, “준시장형 공기업”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감사를”을 “감사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을 “감사위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5조제3항”을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추천한”을 각각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으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제34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를 “기관장”으로, “있다”를 “있고,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7항”을 “제31조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확정한 후”를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한 후”를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정한 후”를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여건”을 “경제여건, 정부의 정책기조”로 한다.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를 “국제적 기준 및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로,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6월 20일”을 “5월 30일”로, “국회와 대통령”을 “운영위원회, 국회 및 대통령”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등) 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이하 “성과관리센터”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성과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기관장 및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사업
4. 공공기관 인사·보수 및 재무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
5.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성과관리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소장은 성과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관리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성과관리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 공기업 등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의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소장은 제48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성과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의 임명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목표를 수립하거나 경영실적을 평

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u>운영에</u>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 영의 <u>투명성</u> 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u> <u>필요한 운영에</u> ----- ----- ----- ----- ----- <u>투명성 및 지속가</u> <u>능성</u> ----- ----- -----.
제3조(<u>자율적 운영의 보장</u>) (생 략) <신 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법</u> <u>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u> <u>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u> <u>공기관의 감독에 있어 그 운영</u> <u>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u> <u>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u> <u>여야 한다.</u>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
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
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생략)

2.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
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치) (생략)

1. ~ 6. (생략)

ㄱ.

1. -----

가. -----

-----이상이거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
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
식을 상장한-----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

-----기관 및 대학
병원 등-----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u>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u>	7. ----- <u>공기업·준정부기관</u>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른 <u>보수지침</u>	9. ----- <u>임원의 보수지침 및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등</u> -----
10. <u>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u>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u>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u> -----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u>1인</u>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u>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u>2인</u> ----- <u>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상임위원으로 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4. -----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
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 ~ ⑥ (생략)

<신설>

-----학계 ·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장-----
-----14인-----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또는 다
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신 설>

위원장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보수 분야 분과위원회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무처)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조

<신 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공무원 등의 파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등 공공기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상장 공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대학병원-----

-----.

③ <u>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u>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생략)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u>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u>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24조(임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u>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u> ② ~ ④ (생략) ⑤ <u>감사는</u>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u>준정부기관</u>----- ----- ----- 설치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공기업과</u>----- -----<u>준정부기관</u>----- ----- -----. 제24조(임원) ① ----- ----- ----- <u>감사위원을</u> ----.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감사위원은</u> ----- ----- -----.
---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생략)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0조제2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
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⑦ (생략)

제28조(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생략)

<신설>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
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제34조에 따른 임원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
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
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
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
야 한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기관장-----

-있고,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
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6항·
제7항-----

③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

-----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④ -----
-----경제여건, 정부의 정책기조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제적
기준 및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
법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⑥ (생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
게 보고한다.

⑧ ~ ⑩ (생략)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5
월 30일-----

-----운영위원회, 국회 및
대통령-----.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의 설립 등) ① 공공기관에 대
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
련 정책의 조사·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
관리센터(이하 “성과관리센터”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성과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③ 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기
관장 및 기관의 경영실적 평
가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및 경
영상담 지원 사업

4. 공공기관 인사·보수 및 재
무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

5.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목
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성과관리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소장을 제
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
로 하며, 소장은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⑤ 소장은 성과관리센터를 대
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제50조(경영지침) ① . ② (생략) <u><신 설></u>	<u>방법 등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관리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u> <u>⑨ 정부는 성과관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u>⑩ 성과관리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50조(경영지침)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 공기업 등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u>
--	--